

#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732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4. 10.

발의자 : 박완주 · 송갑석 · 김병기  
신창현 · 기동민 · 장정숙  
윤후덕 · 소병훈 · 김종민  
인재근 · 정인화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, 현행법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 있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다른 자는 이를 애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기초생활급여, 연금 등 수급권이 애태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애태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「국민연금법」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애태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

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앱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5제4항 및 제24조의6 신설).

##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5제1항 중 “노후생활안정자금”을 “노후생활안정자금(이하 “농지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”을 “농지연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(이하 “농지연금수급자”라 한다)에게 지급된 농지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전은 압류할 수 없다.

④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농지연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
제2장제2절에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6(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) ① 농지연금수급자는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(이 조에서 “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”라 한다)로 입금하도록 공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사는 농지연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·절차와 제3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의5(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)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<u>노후생활안정자금</u>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4조의5(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노후생활안정자금</u>(이하 “농지연금”이라 한다)-----.</p> <p>② <u>농지연금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<u>농지연금</u>을 지원받는 사람(이하 “농지연금수급자”라 한다)에게 지급된 농지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전은 압류할 수 없다.</p> <p>④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농지연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</p> <p>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제24조의6(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)</p>
<p><u>③ (생략)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

① 농지연금수급자는 제24조의5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(이하 이 조에서 “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”라 한다)로 입금하도록 공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사는 농지연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·절차와 제3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